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신장식 · 황운하 · 백선희
최혁진 · 김선민 · 차규근
이기현 · 이용우 · 이해민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

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32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u> <u>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u> <u>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u> <u>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u> <p><u>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u></p>

	<p><u>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u></p>
제3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 설></u> 8. (생략) ⑤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